

경운대학교 대학자체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및 「학칙」 제94조(자체평가)에 의거하여 경운대학교의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체평가라 함은 비전 달성을 위하여 수립된 대학발전계획과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 대상) 자체평가 대상은 경운대학교의 대학·학부·학과의 교육단위, 직제상의 행정단위, 부속 및 부설기관 단위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산학협력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는 학년도 4월 1일 자료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평가조직

제5조(자체평가 담당부서) ① 자체평가업무의 기획·운영·조정·관리 등 총괄적 업무수행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② 자체평가업무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
2. 자체평가업무 총괄
3. 자체평가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에 반영
4.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재개발처장, 사무처장, 대학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보관 및 업무연락을 담당한다.
- ③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④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기본방향 수립 및 조정
 2. 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선정 검토
 3. 자체평가 결과 활용방안 검토
 4.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자체평가연구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및 행정부서의 과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보관 및 업무연락을 담당한다.
- ③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④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영역, 항목, 지표 및 반영비율 개발
 2. 자체평가 자료수집 및 평가
 3.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8조(자체평가실무위원)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역별 평가업무에 교직원을 실무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운영경비 및 수당) ① 자체평가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경운대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 ②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자체평가기획위원 및 자체평가연구위원에게는 평가업무수행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 절차 및 방법

제10조(평가계획 수립) ①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총장 또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

② 기획처는 평가 해당연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평가계획을 공지한다.

제11조(평가기준) 자체평가의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단위기관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대학, 행정부서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③ 자체평가는 각 단위기관의 제출 자료와 핵심 평가지표 관리부서의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시행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활성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 및 검토하여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 부서는 기획처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4조(평가실시) 평가관은 평가항목 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대상 부서의 부서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평가대상 부서의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한다.

제16조(평가결과 보고) 작성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제17조(평가결과의 공시) 자체평가 결과는 경운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 단위기관의 구조조정,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 결과 우수 단위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재정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